

2010.12.27 미래정책연구실

※ 본 자료는 지난 12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“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.

□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개요

- 수입유통식별표 부착
- 거래내역 신고
- 수입유통이력정보 공개

□ 주요내용

- 국내 유통·판매용으로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는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포함한 식별표를 부착해야 하며 식별표가 부착되지 않은 수입쇠고기는 국내 유통할 수 없도록 함.
 - 식별표부착 등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는 쇠고기수입업자가 2010년 12월 22일에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을 신청한 수입쇠고기부터 적용
 - ※ 단, 국내 유통·판매되지 않는 경우(외화획득용·학술연구용·자사제품 제조 원료용)에는 제외
 - 쇠고기 수입업자가 쇠고기를 수입하는 경우 검역원장에게 전자적 처리 방식으로 수입유통식별번호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, 부여 및 통보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으로 처리
- 거래내역신고 의무대상 영업자 등을 정하여 거래내역을 전자적 처리 방식으로 제출(수입유통이력관리시스템 등록)토록 함으로써 위해사고 발생시 신속한 회수 등 처리가 용이하도록 함.
 - 의무대상 영업자: 쇠고기수입업자(전체), 식육포장처리업자(종업원수 5인

이상), 식육 판매업·식육 부산물 판매업자(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)

- 수입유통관리대상의 기록사항을 수입신고일로부터 3년간 보존
 - 수입유통관리대장에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선하증권번호, 축산물수입 신고필증번호, 검사장소 및 입고일자, 검사결과 및 검사일자, 냉장제품 냉동전환 여부 등을 기록·관리
- 수입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 중 수입유통식별번호, 원산지, 유통기한, 수출국 도축·가공장(일), 수출회사, 수입회사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
 - 수입이력정보는 인터넷(www.meatwatch.go.kr), 휴대전화(6626+인터넷 접속키)로 조회할 수 있으며 2011년1월부터는 스마트폰을 통해 별도의 입력 없이 이력정보를 좀 더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 예정
-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에 필요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권한일부를 수입 검역 전문기관인 수의과학검역원에 위임, 통관부터 국내유통·판매까지 유통경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해사고 발생시 신속한 회수가 가능할 수 있는 체계 마련
 - 권한위임: 수입유통식별번호 부여·통보, 거래내역 신고·접수, 수입쇠고기 이력시스템 운영·관리, 수입쇠고기 관련 유통영업자 단속 등

※ 본 자료는 지난 12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“쇠고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육량등급기준 강화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.

□ 추진배경

- 고급육 생산을 위한 장기비육 증가로 고비용 생산체계에 대한 우려 증대
 - 소 도체 등급기준 개정을 통해 가축개량 및 사양기술 보급을 촉진하고 고비용 생산체계 개선 필요

□ 세부내용

- 육량 C등급 육량지수 상한선을 2단계로 나누어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 한마리에서 평균 불가식 지방량을 5.3kg 감소
 - 2011년 6월 1일부터 육량 C등급 육량지수를 62.0(현)에서 62.7(1단계)미만으로 상향하여 마리당 불가식 지방을 2.9kg 감량
 - 2013년 1월 1일부터 육량 C등급 육량지수 상한 경계점을 62.7(1단계)에서 63.3미만으로 2단계 상향 조정함으로써 불가식 지방량을 2.4kg 감축 유도
- ※ 육량지수 : 도축한 소 한마리에서 생산되는 정육(고기)량의 비율을 지수화한 수치
- 육량 A등급의 하한선은 2013년 1월(2단계 적용)부터 67.5에서 67.2미만으로 하향 조정하여 A등급에 대한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육량등급 출현율의 형평성 유지
 - 육량 C등급의 육량지수를 상향 조정하여 고기 생산비율을 높이는 한편, A등급의 하한 경계를 하향함으로써 생산의욕을 고취하는 각 육량등급간 출현율의 형평성 유지
 - 현행 67.5미만에서 67.2미만으로 하향하여 현재(10.1~9월) 기준으로

육량등급별 출현율을 30(A) : 40(B) : 30(C)으로 조정

- 육량등급 판정기준이 되는 육량지수를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와 도매시장 경매전광판 등에 제공하여 구매자 편익 증진
 - 동일 육량등급 내에서도 육량지수에 따른 가격 차별화를 유도하여 생산농가의 육 생산성 향상 촉진
- 소 도체에 육질과 육량등급을 병행 표시하는 현 표시방법은 소매단계에서 오인할 수 있다는 권익위 등의 지적에 따라 육질등급과 등위만 표시하도록 개선

□ 기대효과

- 불가식 지방 생산량을 소 한 마리당(도체중 432kg기준) 100kg미만으로 유도하여 쇠고기 생산비 절감을 통한 한우 비육산업의 경쟁력 강화
- 소 사육 농가별로 가축개량과 사양기술 수준에 맞추어 육질 및 고기 생산량을 함께 높이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장기비육에 따른 지방과다형 고급육 생산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
- 육량지수를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와 도매시장 경매 전광판으로 추가 제공하여 구매자의 편익 증진에 기여